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인요한의원 등 3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표시·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

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구급차 구급차의 설계·제작 기준에 있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급차에 동승하는 구급대원이 차량 내부나 장비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납이 용이해져 보다 나은 응급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량의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에 대한 지원 방안과 교체 기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차량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100센티미터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현재 구급차 내 환자실의 크기와 같은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급차 내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